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

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27
----------	-----

2025. 4. 30.(수)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최정훈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25년 4월 22일

-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 · 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최정훈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충청북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도지사와 공직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을 규정함(안 제5조)
- 청렴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해 규정함(안 제10조~제12조)

- 청렴도 평가에 대해 규정함(안 제13조~제15조)
- 청렴이행서약제 시행에 대해 규정함(안 제16조~제18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가. 제정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4개 장,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, 장별 규정은 아래와 같음.

장	제1장 총칙	제2장 충청북도 청렴마일리지제	제3장 충청북도 청렴도 평가	제4장 청렴이행서약제
조 문	제1조(목적) 제2조(정의) 제3조(책무)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제6조(사업 시행 등) 제7조(협력체계) 제8조(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) 제9조(표창)	제10조 (청렴마일리지제의 운영) 제11조(포상 및 시상) 제12조(성과관리 연계)	제13조(청렴도 평가) 제14조(평가 기준) 제15조(평가 결과)	제16조(청렴이행 서약제) 제17조(제출 시기) 제18조(불이행에 대한 조치)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및 도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, 공무원, 청원경찰, 청원산림보호직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의 청렴도 향

상을 도모하고,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,

-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시행,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, 청렴도 평가 및 청렴이행서약제의 시행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【참고】

- 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·도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.

시·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*	세종
제정일	17.9.21.	22.10.26.	24.5.20.	12.5.21.	24.5.31.	16.10.20.	11.6.9. 23.9.21.	-
시·도	경기	강원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제정일	11.6.23.	24.7.5.	23.8.10.	15.12.28.	14.10.10.	21.4.1.	22.10.18.	-

나. 주요 조문의 검토

- ‘안 제2조’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 것으로, “공직자”, “부패행위”, “청렴마일리지제”에 관하여 규정함.
 - 제1항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“공직자”로 정의하고, 충청북도 공무원 외에 공무원·청원경찰·청원산림보호직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였고, 이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‘안 제3조’는 제1항에서 도지사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책무를, 제2항에서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함.
 - 제2항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(공직자의 청렴의무)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정으로, 제1항의 규율 대상인 도지사와 차이가 있어, 향후 별개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

필요가 있어 보임.

- ‘안 제4조’는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,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.
 -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합성을 위하여 “청렴 및 반부패 정책”을 “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”로 표현을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.
- ‘안 제6조’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.
 - 본 조문의 제목은 “사업 시행 등”이나, 본 조문에서 사업 이외의 내용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, 조문의 제목을 “사업 시행”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.
- ‘안 제8조’는 제1항에서 사업 시행을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하여, 제2항에서 개인정보의 최소 범위 수집 제한에 관하여 규정함.
 - 제2항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,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6조(개인정보의 수집 제한)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보이므로, 해당 법률의 조문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, 청렴마일리지제도, 청렴도 평가 및 청렴이행서약제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,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, 조례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」 1부.

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충청북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직자”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및 도 산하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

나. 「충청북도 공무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」에 따른 공무원,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

다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도 소속 공직유관단체 임·직원

2. “부패행위”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행위를 말한다.

3. “청렴마일리지제”란 청렴활동 참여도,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·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점이나 감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성과평가 등에 반영·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운영으로 도 소속 공직자, 기관·단체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
2.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
3.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·추진과제
4.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·시행과 관련하여 충청북도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 시행 등)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교육 및 홍보 사업
2.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·조사

3.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·설문조사

4. 부패방지시스템 구축·운영

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협력체계)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)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, 소속,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·이용되어야 한다.

제9조(표창) 도지사는 도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「충청북도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2장 충청북도 청렴마일리지제

제10조(청렴마일리지제의 운영) ① 도지사는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.

제11조(포상 및 시상) ① 도지사는 청렴마일리지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고 상패·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② 포상 부문, 평가 기준, 수상부서 우대사항 및 시상 등에 관한 세부 내용

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.

제12조(성과관리 연계) 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청렴마일리지제 평가 결과를 부서 성과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3장 충청북도 청렴도 평가

제13조(청렴도 평가)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평가(이하 “평가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공직자는 자료 제출, 설문 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4조(평가 기준) ① 도지사는 내·외부 청렴도, 부패행위 예방 노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.

② 그 밖에 평가대상의 범위, 세부 지표 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.

제15조(평가 결과) ① 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필요시 인사 등 평가자료로 활용하거나 우수기관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평가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4장 청렴이행서약제

제16조(청렴이행서약제) ① 도지사는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직자, 입찰참가자, 계약상대자,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을 제출받아야 한다(이하 “청렴이행서약제”라 한다).

② 제1항에 따른 청렴이행서약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
2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
3.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에 따른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

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청렴서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이행서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.

④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.

제17조(제출 시기) 청렴이행서약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6조제2항제1호: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 체결할 때
2. 제16조제2항제2호: 신규 채용시
3. 제16조제2항제3호: 매년 최초 보조금 교부결정시

제18조(불이행에 대한 조치) ① 도지사는 공직자가 청렴이행서약을 위반할

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계약체결·이행 및 보조금 수령·집행 과정에서 청렴이행서약을 위반한 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2에 따른 낙찰자 결정 취소,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
2.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